헌법재판소 사무처 조직에 관한 1959년 11월 13일 데크레

(Décret n°59-1293 du 13 novembre 1959 relatif à l'organisation du secrétariat général du Conseil constitutionnel)

제1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1)은 헌법재판소장의 추천으로 공화국 대통령의 데크레에 의해임명된다.

제2조

헌법재판소장의 감독 하에,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행정업무를 지휘한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행정분야의 모든 행위와 결정에 대한 서명을 위하여 헌 법재판소장의 위임을 받을 수 있다.

제3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업무의 준비와 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사무처장은 위 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4조

헌법재판소의 운영경비는 헌법재판소장 또는 본 데크레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무처장이 지불명령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장에 의해 임명되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회계담당자는 어음지불 결제를 담당한다.

제5조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장은 직접 또는 파견근무 방법을 통하여 그 직무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

헌법재판소장과 사무처장의 공식적인 서신은 1958년 12월 27일 데크레에서 규정한

¹⁾ 사무처장을 보통 제10번째 재판관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각종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사무처장은 행정최고재판소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들도 법조인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헌법재판에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전학선, 프랑스 헌법재판절차의 신속성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14년, 87면.

조건에 따라 우편요금 면제의 혜택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장과 사무처장은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 선거소송 분야의 절차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발송품이 도착되었다는 수신확인서가 첨부된 등기우편을 무료로 발송할 수 있다.

제7조

동 데크레는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게재된다.